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14 선고 2018가단522968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

##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김민정, 송호섭, 박민정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윤희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선용

변론 종결 2020. 6. 26.

판결 선고 2020. 8. 14.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739,0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2.부터 2018. 10.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88,739,4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2.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 유

###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1999. 6. 28.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는 C보험계약을, 2004.9. 11.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는 D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기초한 피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에게 2008. 5.21.경부터 2013. 7. 11.경까지 보험금 합계 91,239,479원(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고한다)을 지급하였다(구체적인 지급내역은 별지 표 중 '보험금 지급일' 및 '지급보험금'란의 기재와 같다).

다. 한편, 피고는 2017. 11.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피고는 원고를 포함하여 5개의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 일당이 지급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해 비교적 입원이 용이한 병원만을 골라입원치료를 받거나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고, 병원을 계속하여 옮기면서 장기간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는 2008. 4. 9.경부터 같은 해 5. 19.경까지 목포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승모판폐쇄 부전증 등의 진단을 받고 41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는 방사선 촬영, 위내시경, 이학적 검사결과 특이한 소견이 없었고 요추 MRI 검사결과 정상이었으며, 입원기간 동안 피고에게 주사 등이 처방된 것으로 확인되나 시행기록이 없어 실제 피고에게 주사가 투약이 되었는지도 의심스러운 상황으로, 피고의 위와 같은 질병치료는 통원치료에 의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하거나 짧은 입원치료로 가능하였던 것으로 피고는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41일간 과다하게 입원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08. 5. 20.경 피해자 원고에 위 질병에 대하여 41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원고 보상 담당 직원으로부터 같은 달 21.경 보험금 명목으로 3,9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7.11.경까지 277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50,099,27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라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고단1378),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원고의 주장

### 가. 주위적 주장

피고는 원고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장기간 입원이 필요하지 않거나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하였음에도 허위의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를 사실로 믿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는바, 이는 이사건 각 보험계약상의 보험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원고를 기망한 것으로, 애초에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책임은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보험금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지급받은 보험금 상당액인 91,239,479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음은 명백하고,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지급받은 보험금 상당액인 91,239,47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예비적 주장

부당이득금 내지 손해배상금의 액수와 관련하여, 설령 주위적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지급받은 보험금 91,239,479원에서 적정입원일수에 해당하는 보험금

2,500,000원을 공제한 88,739,479원을 부당이득금 내지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판단

####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통원치료 또는 단기간의 입원치료를 받는 것으로 충분하였음에도 필요 이상 장기간 입원을 하는 방법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212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은 원고가 지급한 이 사건보험금 전액이 아니라 원고가 지급한 이 사건 보험금과 기망행위 없이 정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더라면 지급되었을 보험금의 차액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적정 입원일수와 치료범위에 대하여 청구하였더라면 지급되었을 적정 보험금은 손해액에 서 공제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적정 입원일수는 별지 표 중 '적정 입원일수'란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실제 입원일수에서 적정 입원일수를 뺀 나머지 불필요한 입원일수에 대한 보험금 합계88,739,018원만을 손해액으로 봄이 타당하다[한편 피고는, 갑 제6호증(피고 의료분석및 자문결과)을 작성한 G은 퇴직한 간호사들로 구성된 사설기관으로 그 분석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 위 의료분석 및 자문결과를 작성한 G의 구성원 중에는 간호사뿐 아니라 전문의도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 의료분석 및 자문결과는 전문의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 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88,739,018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13. 7. 12.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인 2018.10.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한편 원고는, 이 사건 보험금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상의 보험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의 기망에 따라 지급된 것이므로 이 사건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이 경우 부당이득금 역시 원고가 지급한 이 사건 보험금과 기망행위 없이 정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더라면 지급되었을 보험금의 차액이라고 봄이 타당한바, 선택적 청구원인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이상 선택적 청구원인인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영은

## 별지

丑

| 순<br>번<br>1) | 입원일자          | 퇴원일자          | 병원명   | 실제<br>입원일수(①) | 적정<br>입원일수(②) | 보험금 지급일       | 지급보험금<br>(원) | 불필요한 입원일<br>수(①-②)에 대<br>한 보험금(원)과 |
|--------------|---------------|---------------|-------|---------------|---------------|---------------|--------------|------------------------------------|
| 1            | 2008. 4. 9.   | 2008. 5. 19.  | F병원   | 41            | 0             | 2008. 5. 21.  | 4,560,000    | 4,560,000                          |
|              |               |               |       |               |               |               | 1,000,000    | 1,000,000                          |
|              |               |               |       |               |               |               | 1,000,000    | 1,000,000                          |
|              |               |               |       |               |               |               | 1,900,000    | 1,900,000                          |
| 2            | 2008. 11. 15. | 2008. 11. 29. | H정형외과 | 15            | 0             | 2008. 12. 2.  | 240,000      | 240,000                            |
|              |               |               |       |               |               |               | 120,000      | 120,000                            |
| 3            | 2009. 2. 6.   | 2009. 2. 23.  | I병원   | 18            | 0             | 2009. 2. 24.  | 360,000      | 360,000                            |
|              |               |               |       |               |               |               | 180,000      | 180,000                            |
| 4            | 2009. 4. 24.  | 2009. 5. 11.  | F병원   | 17            | 3             | 2009. 6. 24.  | 280,260      | 280,000 <sup>3)</sup>              |
|              |               |               |       |               |               |               | 140,201      | 140,000 <sup>4)</sup>              |
| 5            | 2009. 5. 12.  | 2009. 6. 8.   | J병원   | 28            | 0             | 2009. 6. 24.  | 560,521      | 560,521                            |
|              |               |               |       |               |               |               | 280,402      | 280,402                            |
| 6            | 2009. 6. 23.  | 2009. 7. 2.   | J병원   | 10            | 0             | 2009. 7. 8.   | 420,000      | 420,000                            |
|              |               |               |       |               |               |               | 350,000      | 350,000                            |
| 7            | 2009. 8. 8.   | 2009. 8. 24.  | H정형외과 | 17            | 0             | 2009. 8. 27.  | 1,020,000    | 1,020,000                          |
|              |               |               |       |               |               |               | 850,000      | 850,000                            |
| 8            | 2009. 9. 12.  | 2009. 10. 9.  | K병원   | 28            | 5             | 2009. 10. 12. | 3,000,000    | 2,760,000                          |
|              |               |               |       |               |               |               | 1,250,000    | 1,150,000                          |
| 9            | 2009. 11. 11. | 2009. 12. 1.  | L정형외과 | 21            | 0             | 2009. 12. 11. | 840,000      | 840,000                            |
|              |               |               |       |               |               |               | 700,000      | 700,000                            |
| 10           | 2019. 12. 21. | 2010. 1. 4.   | M한방병원 | 15            | 0             | 2010. 1. 27.  | 1,803,254    | 1,803,254                          |
|              |               |               |       |               |               |               | 752,373      | 752,373                            |
|              |               |               |       |               |               | 2010. 2. 1.   | 1,000,000    | 1,000,000                          |
| 11           | 2010. 1. 5.   | 2010. 1. 22.  | K병원   | 18            | 0             | 2010. 2. 1.   | 2,160,000    | 2,160,000                          |
|              |               |               |       |               |               |               | 900,000      | 900,000                            |
| 12           | 2010. 2. 3.   | 2010. 2. 19.  | J병원   | 17            | 0             | 2010. 3. 5.   | 900,000      | 900,000                            |
|              |               |               |       |               |               |               | 750,000      | 750,000                            |
| 13           | 2010. 5. 4.   | 2010. 5. 17.  | H정형외과 | 14            | 0             | 2010. 5. 20.  | 840,000      | 840,000                            |
|              |               |               |       |               |               |               | 700,000      | 700,000                            |
| 14           | 2010. 6. 11.  | 2010. 7. 2.   | K병원   | 22            | 7             | 2010. 7. 6.   | 380,000      | 300,000                            |
|              |               |               |       |               |               |               | 190,000      | 150,000                            |
| 15           | 2010. 7. 14.  | 2010. 7. 28.  | L정형외과 | 15            | 0             | 2010. 8. 4.   | 900,000      | 900,000                            |
|              |               |               |       |               |               |               | 750,000      | 750,000                            |
| 16           | 2010. 8. 30.  | 2010. 9. 10.  | K병원   | 12            | 0             | 2010. 9. 20.  | 720,000      | 720,000                            |
|              |               |               |       |               |               |               | 600,000      | 600,000                            |
| 17           | 2010. 10. 4.  | 2010. 10. 18. | N의원   | 15            | 0             | 2010. 10. 22. | 300,000      | 300,000                            |
|              |               |               |       |               |               |               | 150,000      | 150,000                            |

|    |               |               |       |    |   |               |                      |                      |
|----|---------------|---------------|-------|----|---|---------------|----------------------|----------------------|
| 18 | 2010. 10. 21. | 2010. 11. 4.  | F병원   | 15 | 3 | 2010. 11. 11. | 1,440,000<br>600,000 | 1,440,000<br>600,000 |
| 19 | 2010. 11. 5.  | 2010. 11. 19. | K병원   | 15 | 0 | 2010. 11. 29. | 1,800,000<br>750,000 | 1,800,000<br>750,000 |
| 20 | 2011. 1. 24.  | 2011. 2. 8.   | K병원   | 16 | 0 | 2011. 2. 9.   | 1,920,000<br>800,000 | 1,920,000<br>800,000 |
| 21 | 2011. 2. 9.   | 2011. 2. 22.  | F병원   | 14 | 0 | 2011. 3. 14.  | 220,000<br>110,000   | 220,000<br>110,000   |
| 22 | 2011. 4. 11.  | 2011. 4. 25.  | N의원   | 15 | 0 | 2011. 5. 2.   | 720,000<br>600,000   | 720,000<br>600,000   |
| 23 | 2011. 4. 28.  | 2011. 5. 11.  | O연합의원 | 14 | 0 | 2011. 5. 17.  | 840,000<br>700,000   | 840,000<br>700,000   |
| 24 | 2011. 5. 25.  | 2011. 6. 7.   | K병원   | 14 | 2 | 2011. 6. 15.  | 1,680,000<br>700,000 | 1,440,000<br>600,000 |
| 25 | 2011. 6. 13.  | 2011. 6. 27.  | P정형외과 | 15 | 0 | 2011. 7. 8.   | 780,000<br>650,000   | 780,000<br>650,000   |
| 26 | 2011. 7. 12.  | 2011. 7. 28.  | Q종합병원 | 17 | 5 | 2011. 8. 9.   | 2,040,000<br>850,000 | 1,440,000<br>600,000 |
| 27 | 2011. 8. 22.  | 2011. 9. 5.   | R신경외과 | 15 | 0 | 2011. 9. 26.  | 901,001<br>751,467   | 901,001<br>751,467   |
| 28 | 2011. 9. 27.  | 2011. 10. 14. | Q종합병원 | 18 | 0 | 2011. 11. 8.  | 2,160,000<br>900,000 | 2,160,000<br>900,000 |
| 29 | 2011. 10. 24. | 2011. 11. 7.  | K병원   | 15 | 0 | 2011. 11. 18. | 1,800,000<br>750,000 | 1,800,000<br>750,000 |
| 30 | 2011. 11. 28. | 2011. 12. 12. | S외과   | 15 | 0 | 2011. 12. 14. | 900,000<br>750,000   | 900,000<br>750,000   |
| 31 | 2012. 1. 6.   | 2012. 1. 16.  | R신경외과 | 11 | 0 | 2012. 1. 26.  | 660,000<br>550,000   | 660,000<br>550,000   |
| 32 | 2012. 4. 10.  | 2012. 4. 23.  | T정형외과 | 14 | 0 | 2012. 4. 30.  | 840,000<br>700,000   | 840,000<br>700,000   |
| 33 | 2012. 5. 16.  | 2012. 5. 30.  | U병원   | 15 | 0 | 2012. 6. 13.  | 900,000<br>750,000   | 900,000<br>750,000   |
| 34 | 2012. 6. 20.  | 2012. 6. 30.  | V한병병원 | 11 | 0 | 2012. 7. 5.   | 960,000<br>400,000   | 960,000<br>400,000   |
| 35 | 2012. 7. 4.   | 2012. 7. 17.  | K병원   | 14 | 0 | 2012. 8. 1.   | 1,680,000<br>700,000 | 1,680,000<br>700,000 |
| 36 | 2012. 7. 31.  | 2012. 8. 16.  | Q종합병원 | 17 | 5 | 2012. 8. 22.  | 2,040,000<br>850,000 | 1,440,000<br>600,000 |
| 37 | 2012. 8. 29.  | 2012. 9. 11.  | K병원   | 14 | 0 | 2012. 9. 24.  | 660,000<br>550,000   | 660,000<br>550,000   |
| 38 | 2012. 9. 19.  | 2012. 10. 4.  | Q종합병원 | 16 | 0 | 2012. 10. 10. | 1,920,000<br>800,000 | 1,920,000<br>800,000 |
| 39 | 2012. 10. 23. | 2012. 11. 5.  | T정형외과 | 14 | 0 | 2012. 12. 3.  | 280,000<br>140,000   | 280,000<br>140,000   |

|     |               |               |       |    |   |               |            |            |
|-----|---------------|---------------|-------|----|---|---------------|------------|------------|
| 40  | 2012. 12. 4.  | 2012. 12. 17. | V한방병원 | 14 | 0 | 2012. 12. 20. | 1,680,000  | 1,680,000  |
|     |               |               |       |    |   |               | 700,000    | 700,000    |
| 41  | 2012. 12. 28. | 2013. 1. 10.  | K병원   | 14 | 0 | 2013. 3. 4.   | 1,680,000  | 1,680,000  |
|     |               |               |       |    |   |               | 700,000    | 700,000    |
| 42  | 2013. 1. 14.  | 2013. 1. 28.  | T정형외과 | 15 | 0 | 2013. 5. 14.  | 720,000    | 720,000    |
|     |               |               |       |    |   |               | 600,000    | 600,000    |
| 43  | 2013. 2. 12.  | 2013. 2. 25.  | K병원   | 14 | 0 | 2013. 6. 13.  | 840,000    | 840,000    |
|     |               |               |       |    |   |               | 700,000    | 700,000    |
| 44  | 2013. 3. 4.   | 2013. 3. 18.  | W병원   | 15 | 0 | 2013. 3. 22.  | 1,800,000  | 1,800,000  |
|     |               |               |       |    |   |               | 750,000    | 750,000    |
| 45  | 2013. 3. 25.  | 2013. 4. 6.   | X병원   | 13 | 0 | 2013. 4. 10.  | 1,560,000  | 1,560,000  |
|     |               |               |       |    |   |               | 650,000    | 650,000    |
| 46  | 2013. 4. 22.  | 2013. 5. 9.   | V한방병원 | 18 | 0 | 2013. 6. 7.   | 1,080,000  | 1,080,000  |
|     |               |               |       |    |   |               | 900,000    | 900,000    |
| 47  | 2013. 6. 22.  | 2013. 7. 5.   | Y정형외과 | 14 | 0 | 2013. 7. 11.  | 840,000    | 840,000    |
|     |               |               |       |    |   |               | 700,000    | 700,000    |
| 합 계 |               |               |       |    |   |               | 91,239,479 | 88,739,018 |

- 1) 피고에 대한 행사판결문(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고단1378) 별지 별표일람표(3)의 연번과 같다.
- 2) 원고는 2020. 1. 21.자 준비서면에서 직접 입원일수를 적용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라 불필요한 입원일수에 대한 보험금을 산정하였는바, 그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으므로, 이 부분 보험금은 원고가 위 준비서면에서 주장하는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하였다.
- 3) 원고는 이 부분 직접 입원일수로 산정한 보험금액을 280,260원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산출내역에 의하더라도 280,000원(= 14 × 20,000원)이므로, 이 부분 보험금액은 280,000원으로 인정한다.
- 4) 원고는 이 부분 직접 입원일수로 산정한 보험금액을 140,201원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산출내역에 의하더라도 140,000원(= 14 × 10,000원)이므로, 이 부분 보험금액은 140,000원으로 인정한다.